

의안번호	2209196
의 퇴 인	김선교 의원
회 답 일	2025. 6. 11.
추계번호	25B1748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자재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식자재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5.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5	안 제10조(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5조(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제1항)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6조(분야별 진흥시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1.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8	안 제17조(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중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이하 이 조에서 “중소식자재유통단체”라 한다)으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재량규정
9	안 제19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20조(식자 재유통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21조(식자 재유통산업 컨설 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2	안 제22조(식자 재유통 우수관리 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25조(우수 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7조(식자 재유통산업진흥 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의무규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8조(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식자재유통 물류표준화의 촉진 2. 식자재유통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식자재유통 물류공동화의 촉진 4.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식자재유통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식자재유통 수배송시설 및 공동수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1. 국내외 식자재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식자재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재량규정
16	안 제30조(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 실시,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일부 조문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문과 유사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표 1] 「유통산업발전법」과 제정안의 유사 조문 비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식자재유통산업</u> "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산지 생산자 등의 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식자재를 <u>급식 및 외식업소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u> 구매·보관·포장·식품안전·배송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자재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공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식자재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5.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분야별 진흥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항 2.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제17조(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중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이하 이 조에서 "중소식자재유통단체"라 한다)으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가공·제공 4.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8조(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식자재유통 물류표준화의 촉진 2. 식자재유통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식자재유통 물류공동화의 촉진 4.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식자재유통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식자재유통 수배송시설 및 공동수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식자재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식자재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자재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별 시행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별 시행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제정안의 기본계획 등 수립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정책연구개발사업¹⁾을 통해 신규 예산 편성 없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²⁾,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31-300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계획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식자재유통산업 현황,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계획수립 규모, 비용 발생 여부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참고사례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별도 재정소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중임(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안 제9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의 추계를 위해서는 식자재유통산업 범위 및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급식 및 외식업소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선별하기 어려워³⁾ 합리적으로 실태조사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 － 일반적으로 식품유통업체는 외식업체 외에도 가정, 제조업 또는 판매업자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급식 및 외식업체로만 유통되는 영역을 별도의 산업이나 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음

3)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식자재유통업체”를 “급식 및 외식업소가 필요로 하는 일체의 식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사업운영모델의 유형, 취급상품 및 시장의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는 업체”로 정의하고 있음

[표 2] 농수산물 유통 관련 실태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예산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3031-324)	농산물 수급정보, 도소매가격, 유통실태, 수입정보,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실태 등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및 전파하여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개별거래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	4,146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2832-380)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표준화, 인력양성, 정보분석, 기술거래 이전 지원, 식품 위생품질 경쟁력 제고, 판로지원 등을 하는 사업	20,510
- (내역)식품외식정보분석(식품정보분석)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등	1,794
- (내역) 외식정보분석 기반 구축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포함), 외식산업 경기동향조사, 외식소비 트렌드 조사 등	789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민간위탁) (3067-305)	수산물 유통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 및 비용 등 조사·분석	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10조)

-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등록제도 구축 등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등록제도 구축 비용의 추계를 위해서는 식자재유통산업 범위 및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급식 및 외식업소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선별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등록제도 구축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 일반적으로 식품유통업체는 외식업체 외에도 가정, 제조업 또는 판매업자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급식 및 외식업체로만 유통되는 영역을 별도의 산업이나 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안 제15조)

- 제정안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지방자치단체의 참고사례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서면 개최하여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분야별 진흥시책(안 제16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시책과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의 진흥시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원 필요 규모, 사업별 단가,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안 제17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중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의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물류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3] 농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수산물물류환경개선(민간경쟁) (3040-307)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표준화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수산물 하역기계화 추진 및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1,07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851-345)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	163,368
-(내역)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	105,568
-(내역)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소부	4,000
-(내역)외식업체육성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국산 식재료 구매지원	30,000
-(내역)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	농식품부가 지정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에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비용,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지원	23,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창업의 지원(안 제19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창업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4] 농수산물 유통 관련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민간경상, 민간자본) (3040-322)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교육 수산 전문 직매장 개설, 사업자 창업 교육	1,350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851-345)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	163,368
-(내역)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	105,568
-(내역)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소부	4,000
-(내역)외식업체육성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국산 식재료 구매지원	30,000
-(내역)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	농식품부가 지정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에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비용,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지원	23,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0조)

-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기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 지원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유통 및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5] 농식품유통 및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130-331)	농업농촌교육훈련,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여성농업인역량강화, 농업경영활성화, 한뉴FTA협력사업 등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0,072
-(내내역)농식품유통교육훈련	유통혁신 및 수출, 식품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농수산식품종사자 전문교육 지원(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1,253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2832-380)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표준화, 인력양성, 정보분석, 기술거래 이전 지원, 식품 위생품질 경쟁력 제고, 판로지원 등을 하는 사업	20,510
-(내역)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업희망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계약학과 운영,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으로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4,5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산업 컨설팅 지원(안 제21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자재유통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6] 농수산물식품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2832-380)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표준화, 인력양성, 정보분석, 기술거래 이전 지원, 식품 위생품질 경쟁력 제고, 판로지원 등을 하는 사업	20,510
-(내역)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국산원료 사용 중소기업의 품질·위생 분야 컨설팅 지원 (산정기준) 컨설팅 분야별 지원한도 설정, 최대 20백만원 지원	1,000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민간경상) (3040-322)	홈쇼핑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컨설팅 사업 추진	1,3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 및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2조 및 제25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자재유통 우수관리 인증제 운영 및 인증 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식자재유통 우수관리 기준, 절차, 방법,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및 그 자격을 갖춘 기관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7] 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6032-300)	인증 농식품의 생산·유통관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인증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11,139
-(내역)GAP 및 이력추적관리		3,549
-(내내역)(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교육 및 홍보)	GAP인증기관, GAP관리시설, 이력관리 운영, GAP인증 제도 개선사항 등 교육 및 홍보	338
-(내내역)(GAP인증 사후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32개소 지원 및 사무소 현장조사 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반영,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현장조사 관리 강화	95
-(내내역)(GAP인증 활성화)	59개 인증기관 지원, 심사원 교육, 인증 유통 활성화 사업 및 홍보	3,116
-(내역)우수농식품인증		2,008
-(내내역)(우수식품 사후관리 분석근로자 인건비)	우수식품 사후관리 등 분석근로자 인건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104
-(내내역)(우수식품 및 학교급 식 식재료 사후관리)	전통식품 품질인증(85품목, 한과류, 된장, 김치류 등)과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KS인증(169품목, 김치류 등)의 규격, 제도 개선 사항 등 교육 및 사후관리	1,654
-(내내역)(전통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시험연구 등을 통한 규격(안) 마련 위탁 추진(규격기준, 기술정보 자료 조사, 제품의 특성 분석 및 표시·품질 수준 설정)	250
농산물원산지관리(6032-311)	농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17,873
-(내역)원산지인증관리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및 원산지 인증 홍보·지원	1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안 제27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 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안 제28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식자재유통 물류표준화 촉진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식자재유통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해 국내외 식자재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추계를 위해서는 식자재유통산업 범위 및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급식 및 외식업소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선별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효율화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수산물 유통·물류 효율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이 있음

[표 8] 농수산물 유통·물류 효율화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3032-456)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출하확대지원	25,879
-(내역)공동선별비지원	산지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12,911
-(내역)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재고확인-주문-입고-출고-회수-정산 등 물류기기 현황을 운영·관리하는 aT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운영·점검 등에 필요한 행정경비와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팔렛,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 업체(폴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 일부 지원	11,068
-(내역)도서지역내륙거점통합 물류운영지원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을 위한 선정, 점검 및 관리 등 행정경비	1,900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 (3033-350)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품목 특성에 맞게 산지 유통을 규모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	29,387
-(내역)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지원	대형유통업체, 플랫폼 유통 등에 대응하여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구축 지원	22,294

사업명	사업개요	2025예산
-(내역)저온유통체계구축	예냉 등 산지-소비지간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 신선도 등 상품성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출하 조절 및 수익성 제고 가격 변동이 큰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 출하조절 가능한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5,540
-(내역)산지조직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농가조직화,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 도모	625
발작물산업육성 (3032-338)	발작물 경쟁력 강화 및 자율수급조절 제고	11,472
-(내역)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발작물 주산지 중심의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 기 위해 공동경영체에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9,155
-(내역)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운영	발작물 주산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선제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단위 주산지 거버넌스 운영으로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유통자율조절 이행 추진	817
농식품소비기반조사 (3041-385)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소비정보 제공 및 홍보, 농축산물 구매시 할인지원, 지역농산물 지역우선소비를 위한 체계 구축, 직매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123,424
-(내역)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실행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체계 구축·확산	7,490
-(내내역)(확산기반 조성)	지자체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지원	450
-(내내역)(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공공급식 수요·공급자간 거래시스템, 행정조직의 관리시스템, 대국민 정보 서비스 등 기능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지원(* '22.9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오픈)	4,640
-(내내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먹거리가 지역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건축·시설·감리비 등 지원(지원기간 : 2년)	2,400
수산물물류환경개선(민간경상) (3040-307)	지게차, 파렛트, 여상자 등 표준화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수산물 하역기계화 추진 및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1,07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안 제30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식자재유통업체의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장 점검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점검 주기, 대상업체 수, 점검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go.kr